



문서번호 : 26-02-민생위-0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제 목 :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과로사 유발하고 골목상권 죽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전송일자 : 2026. 2. 12.(목)

전송매수 : 총 9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보도자료

**과로사 유발하고 골목상권 죽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쿠팡 잡으려다 노동자와 중소상인 벼랑으로 내몰기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 2. 12.(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부와 여당이 쿠팡의 독점을 막는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는 정책입니다. 한편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다하니, 스스로도 모순에 빠진 형국입니다. 새벽배송 허용은 결국 마트노동자, 배송노동자들의 과로사가 확산되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유통노동자 전반의 건강권, 휴식권의 저하를 불러올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또한 대형마트의 사업 확장과 경쟁 속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도 지금보다 더한 위기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중소상인들은 정부가 말하는 쿠팡 견제는 결국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쿠팡과 대형마트라는 거대 고래들의 싸움 등쌀에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중소 유통업체라는 새우들의 등만 터지게 될 것’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마트·택배·유통 노동자들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의 종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관망하는 미국과 쿠팡, 당정의 새벽배송 논의에 고통받는 노동자, 중소상인들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노동자들의 과로사 확대를 가져오고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정면에서 침해할, 골목상권을 벼랑으로 내몰게 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과로사 유발하고 골목상권 죽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일시 장소 : 2026. 02.12 (목) 오전 10시, 청와대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발언순서
 -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박정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이동호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

- 발언 이후 퍼포먼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1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대한 노동자, 중소기업,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붙임2 : 현장사진

▣ 후속보도자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1_의견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대한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 핵심 의견

- 쿠팡을 규제하지 않고 되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는 정책.
- 또한 쿠팡 등 안전 규칙 없이 확대된 새벽 배송으로 연속·고정 야간노동에 의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사한 야간노동 일자를 확대하는 정책
- 대형마트 매장의 야간 온라인배송제한을 풀다는 것은 400여 개에 달하는 대형마트 매장이 한순간 도심물류센터가 된다는 의미로, 이것으로 인해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 야근노동의 증가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에 미칠 영향, 화물차 운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음.
- 정부가 할 일은 유통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쿠팡과 대형마트 등 거대자본의 속도 경쟁을 규제하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당정청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쿠팡을 규제해 과로사를 막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의 문제점

1) 마트, 배송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침해, 과로사 확대

① 야간노동의 확대

- 새벽배송은 단순히 배송 노동자의 심야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 아님. 새벽 배송을 위해 상품을 준비하고 필요한 상품을 옮겨야하는 노동자들 역시 심야 노동으로 내몰리게 될 것. 수 많은 노동자가 심야 노동을 강요받게 됨. 또한 대형마트의 모델은 다른 유통업체까지 속도경쟁, 야간 경쟁에 빠져들며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② 산재사고 확대

-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자정에서 새벽 5시, 야간노동의 산재사고 블랙타임’ 보고서에 의하면 “야간노동은 단순 사고를 넘어 생체리듬을 무너뜨려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구조적 건강위해 요인”임을 명확히 함.

- 산재사고 10건 중 8건이 초심야시간(오전 0시~5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간대에 과로사의 주범인 심장·뇌혈관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재 승인건수 790건 중 국제노동기구(ILO)가 야간노동으로 규정하는 초심야시간(0~5시)에 발생한 산재가 81.3%(642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자정(290건, 36.7%)과 새벽 5시(135건, 17.1%)에 사고가 집중됐다. 저녁(18~23시)은 15.8%(125건), 오전(6~11시)은 2.9%(23건)였다. 오후(12~17시) 시간대는 0건으로 집계되지 않았음.
- 산재 질병 유형에서도 초심야시간의 과로 위험이 드러났음. 산재 승인 사례 가운데 심장질환(40.3%)과 뇌심혈관질환(29.9%)이 전체 70.2%를 차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모든 시간대에서 심장질환 비율은 절반을 넘었고 새벽 5시에는 68.9%에 달했음.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망은 과로사로 여겨짐. 고강도 육체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뇌와 심장 혈관이 막혀 사망.

③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무력화

-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노동자들을 막기 위해 여당이 주도하는 3차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쿠팡이 1·2차 사회적 합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이행 계획을 요구했음에도 쿠팡은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오히려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뻔뻔한 대응만 일삼고 있는 쿠팡은 산재 은폐까지 자행했음.
-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무너진 합의를 바로 세우는 것.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시키지 못하고 쿠팡발 속도 경쟁이 타택배사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또 다른 쿠팡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함.

2) 쿠팡도 잡지 못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한 골목상권 붕괴만 초래

① 대형마트의 '다크 스토어(Dark Store)'화 전략

- 현재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점포의 후방 공간이나 유휴 공간을 온라인 배송을 위한 물류 기지, 즉 PP(Picking & Packing) 센터로 개조하고 있다. 만약 규제가 완화되어 365일 24시간 배송이 가능해진다면, 전국의 수백 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실상 거대한 '다크 스토어'로

변모하게 된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속도' 때문이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익일 배송)과 달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발송되는 물건은 1시간~3시간 내 배송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배달의민족 'B마트'나 쿠팡이츠 마트가 주도하고 있는 '퀵커머스(Quick Commerce)' 시장에 대형마트 자본이 전면적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퀵커머스의 골목상권 침탈 메커니즘

- 퀵커머스는 골목상권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소비자들이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이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막강한 소싱 능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신선식품, 생필품, 심지어 아이스크림 하나까지 30분~1시간 내에 배달해 준다면, 동네 상점의 존재 가치는 소멸한다.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B마트의 도심형 물류센터(MFC)가 들어선 지역의 인근 편의점 매출은 8.4%, SSM 매출은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마트라는 단일 플랫폼의 영향력만으로도 골목상권이 휘청거린다는 증거다. 하물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퀵커머스 전쟁에 뛰어들다면, 그 파괴력은 B마트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다. 동네 정육점, 반찬 가게, 청과상은 대형마트의 '미끼 상품'과 '무료 배송 쿠폰' 공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③ 규제 우회를 통한 불공정 경쟁

- 대형마트 측은 "쿠팡은 규제 없이 24시간 배송하는데 우리만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교묘한 논점 흐리기다. 쿠팡은 도심 외곽의 대형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라스트 마일(Last Mile)' 비용이 높고 즉시 배송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대형마트는 이미 도심 요지에 알짜 부동산(점포)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점포들은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따라 '오프라인 판매'를 전제로 허가받은 시설들이다. 이를 규제 없이 물류 기지로 전용하겠다는 것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설정된 '상업 지역의 룰'을 깨뜨리고 오프라인 거점의 이점과 온라인의 기동성을 독식하겠다는 불공정한 처사이다.
- 익명의 유통업계 관계자조차 "규제를 풀어줘도 쿠팡의 인프라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고백한다. 대형마트가 노리는 진짜 타겟은 쿠팡이 아니라, 온라인 대응력이 취약한 동네 상권의 파이를 뺏어와 적자를 메우려는 것이다. 이는 '혁신'이 아니라 자본의 힘으로 밥그릇을 뺏는 '약탈적 경쟁'의 전형이다.

3. 관련근거

1)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온라인배송 규제는 법리로 확립된 사안

- 2012년 법제처 유권해석 <https://myip.kr/VwSri>
-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받은 상품을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으로 배송하는 행위는,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상품의 저장과 배송이라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그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록자로서 이용하는 행위와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고 최소한 의무휴업일만큼은 대규모점포의 문을 닫게 하여 대규모점포가 아닌 기존 상인 등 소상공인을 통하여 소비와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인바, 만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무휴업일에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되어 의무휴업일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https://myip.kr/WVOKr>
- “그리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 2018년 합헌 결정
-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대형마트 등과 중소기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한다면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저해되며, 중소기업들이 생존 위협을 받는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소유통업자들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적 지원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중소유통업자가 시장에서 퇴출 되거나 경쟁력의 회복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중소유통업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시간 및 아침시간에 국한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도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그 지역 유통시장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할 것인지와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붙임2 : 현장사진



